

제423회 국회
(임시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
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의록
(피해자와유가족지원및추모사업지원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3월25일(화)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28)
6.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4)

상정된 안건

- | | | |
|---|-------|---|
|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 | 2 |
|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 | 2 |
|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 | 2 |
|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 | 2 |
|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28) | | 2 |
| 6.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4) | | 2 |

(10시03분 개의)

○소위원장 이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예.

○소위원장 이수진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님.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6건의 특별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차관님과 담당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에서 차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있고,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법무부·경찰청에서는 담당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은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마는 국무회의 참석과 산불 대응을 위하여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가족분들께서 잠깐 인사하려고 소위원회 시작할 때 배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시다 나가셨나요? 들어오실 때 아마 인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법안 심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심사 절차는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전체 조문에 대해 보고를 받고 개략적으로 심사를 한 후 개별 조문에 대해 세부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8)
6.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4)

(10시08분)

○**소위원장 이수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특별법안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6건의 특별법안에 대해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1쪽에 나와 있는 사고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된 각 제정안들은 이번 12·29 피해의 구제 및 지원, 희생자에 대한 추모 또는 그 진상규명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각종 지원의 특례,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참사로서 조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며 유가족 측에서도 우리 특위에 참석해서 호소한 바와 같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정안들이 포함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 추모사업 등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원 범위, 수준 등 제정안들 간에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각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4쪽에서 7쪽에 나와 있는 대체토론 및 각 제정안들의 구성체계와 지난 공청회에서 진술과 질의의 요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자료 맨 뒤 189쪽까지는 특별법안의 각 조문별로 제정안들의 내용을 비교하여 검토한 자료입니다마는 자료의 양과 내용이 다소 방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심사와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전문위원회에서 별지로 법안별 내용 비교표를 마련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금 큰 B4 사이즈의 비교표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법률안들의 조문별 심사를 위해서 심사자료 별지에 나와 있는 내용 비교표를 바탕으로 각 조문별 주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1쪽 보시면 각 항목 위에 소위 심사자료의 해당 페이지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 제정안의 실제 조문과 참고자료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실 때는 그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소위 심사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특별법안 내용 비교표를 통해서 전체 특별법안들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특별법안에서 먼저 1쪽의 제명과 목적 파트입니다.

각 특별법안들은 이번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 진상규명, 권리보장, 희생자 추모,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각 법안들의 제명과 목적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이 제명과 목

적 부분은 전체적인 제정법률안들의 내용을 먼저 심사하시고 나서 그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명과 목적 규정을 확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에는 각 제정법률안들에서 정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12·29 여객기 참사 또는 사고에 관한 정의, 희생자에 관한 정의, 피해자에 관한 정의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3쪽에 나와 있는 문금주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서삼석 의원안의 경우에는 다른 법안과 달리 참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을 별도의 피해자로 인정하는 피해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정된 피해자들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피해지역과 기타 2차 가해나 유가족단체에 관한 정의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는 제정안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별받지 아니하고 조력을 받을 권리,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 추모·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은 국가 등의 책무와 2차 가해 방지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법안들은 대동소이하게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차 가해 방지와 관련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의무만 규정하는 법안이 있고 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수진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의 경우에는 2차 가해 금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벌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법안들이 특별법이라는 성격을 반영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보시면 문금주 의원안, 서삼석 의원안의 경우에는 지난 과거의 사회적 참사 사례를 참고해서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및 이를 위한 청문회, 조사위원회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 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문금주 의원안이나 서삼석 의원안과 같이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후반에 나옵니다마는 21쪽의 이수진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과 같이 현행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조사위원이나 조사관을 추가로 추천하는 방식도 함께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문금주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서삼석 의원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를 별도로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피해자를 인정하는 위원회를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형태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에 있는 지원·추모위원회입니다.

지원·추모위원회는 각 법률안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위원회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개별 조문 보고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지원단 및 자문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단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마련하는 근거 규정으로 대부분의 법률안들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의 경우에는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해서 피해자 유가족들에 공유되는 정보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고조사 과정에서 의견 개진 등을 하는 경우에 이를 조력하기 위해서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수진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10쪽의 경우에는 각 법률안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관한 지원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은 국가가 이번 참사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공동체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할 의무, 손실보상 그리고 특히 권향엽 의원안의 경우에는 무안공항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법률안들이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 산정 특례에 관한 사항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에 따라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15세 미만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 법률안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은 피해자들에게 심리 지원과 치유휴직 그리고 치유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고용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치유휴직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률안들이 공통적으로 해당 사항을 마련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은 이번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자녀,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 학생인 경우에는 해당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각 법률안들이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사항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15쪽은 각종 복지제도 관련한 개별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법에 관한 특례, 아이돌봄 지원법에 관한 특례, 장애인활동 지원법에 관한 특례를 포함하고 특히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서 별도의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16쪽 역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사항의 일부로서 일상생활돌봄 지원사업, 법률 지원사업, 그다음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관계 기관들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각 법률안들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17쪽은 이번 참사 피해로 인한 피해지역, 공동체들에 대해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해당 사항들은 각 법률안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이번 참사 피해로 인해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치료 및 지원을 위해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김은혜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이 해당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19쪽은 이번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사업 및 추모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모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추모사업의 목적과 추모사업의 내용, 추모기념관에 관한 사항, 지자체가 추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 추모시설에 관한 사항들의 경우에는 추모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특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쪽은 이번 참사 피해자들, 특히 유가족들이 구성하게 되는 유가족협의회와 같은 단체가 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 해당 법인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간주 특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사단이나 재단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기부금품 모집법상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1쪽은 상황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이수진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에서 국회나 지원·추모위원회, 유가족협의회 등이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상황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사고조사 특례에 관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여부 또는 이수진 의원안이나 전진숙 의원안과 같이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사고조사위원이나 사고조사관을 추가로 위촉하거나 임명하게 하는 방식, 두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병합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2쪽에는 보칙 규정입니다.

보칙 규정은 비밀준수 의무, 자격 사칭 금지, 피해자 지원을 명목으로 한 영리활동 금지, 피해자의 권리 보호,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이번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조치 그리고 이번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련한 사항 등을 보칙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벌칙입니다.

벌칙에서는 각 제정법률안에서 담고 있는 의무 위반사항들에 대한 벌칙을 담고 있는데

일부 법률안들 사이에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논의 과정을 통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맨 마지막 25쪽, 부칙도 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과 각종 위원회, 자문단 등의 준비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개략적인 보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기재부, 법무부, 경찰청 순으로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국토부차관 백원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수진 피해자지원소위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 위원님들의 신속한 법안 발의와 특위를 적기 개최해 주셔서 이렇게 빠른 기간 안에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심의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발의된 6개 특별법안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유가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자는 법 취지는 한결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법안 수렴 과정에서 유가족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합리적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4월 7일이면 12.29 여객기 사고가 난 지 100일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특위 심의가 잘 이루어져서 특별법안이 확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법안 전체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각론으로 가면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 끝나고 나면 또 각 조문에 대한 검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도 지금 나와 계시니까 조문별로 심사할 때 각각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입니다.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수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참사로 희생자 유가족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보상·복구 지원 체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특별법 제정도 입법 정책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피해지역의 범위, 유가족 협의회 지원 등에 관해서는 유사 입법례, 타 재난피해자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복지부1차관 이기일입니다.

오늘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 이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여객기 사고 피해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국가의 지원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유가족분들을 비롯한 피해자분들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일상으로 복귀를 앞당기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향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6개 특별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안에 생활, 의료 및 각종 지원금과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특례 등 각종 제도적 지원사항, 심리상담과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치료 등에 대한 지원, 일상돌봄 지원 등 피해자의 유가족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체계상 일부 수정이 필요한 조항은 있으면서도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수용 가능한 입장입니다.

다만 트라우마센터 별도 설치라든지 장애인활동 지원 추가급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문별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법의 제정으로 피해자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상심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법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교육부**.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이주희 국장입니다.

먼저 12월 29일 여객기 참사로 인한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참사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저희 교육부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일 소위원회 자리를 통해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피해자분들에 대한 교육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과 사회적 형평성 등 다양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문별 심사 진행 단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입니다.

여객기 사고 특별법 관련해서 이렇게 빠르게 지원 법안이 마련된 데 대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조속히 검토된 데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재부에서는 작성해 주신 이 법안과 관련해서 충실히 다방면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원을 함에 있어서 재원의 공적 성격 여부를 좀 따져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문제 그리고 그다음에 민간보험과의, 재정이 대처 점에 있다 보니까 그 경계선을 어디까지 그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축조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고용노동부 순서였는데 기재부에서 먼저 하셨네요.

고용노동부에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겪은 유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고용노동부가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간 몇 차례의 어떤 사고를 통해서 저희들 입법안이 된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렸고, 여러 가지 논의를 충분히 더 해야 될 것들은 피해 대상과 지금 방법이라든지 재원 조성, 결국은 이제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들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관계 부처와 함께 성심성의껏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이경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경화 검사입니다.

우선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제정의 입법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이러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국회, 정부, 유가족이 합심하여 굉장히 애써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러한 여러 법안이 함께 발의되어 논의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법무부도 법률지원단을 구성해서 소송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법안 관련해서도 법무부가 여러 가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 논의 지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규정 관련해서 2차 가해행위 처벌이라든가 일부 의무 규정과 처벌 규정이 호응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원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수정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항 논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과학수사심의관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사고 당일 사고 현장에서 시신 수습, 신원확인 또 시신 인도, 유가족 안내 등 적극적으로 정부 부처와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발의된 여객기 참사 특별법의 전반적인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경찰청에서는 필요시 신속 공정히 수사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전체 조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오늘 관계 부처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원국 차관님 지금 여러 가지 형태에서, 치유 목적이라든지 자영업자 보상이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쌓여 있잖아요. 피해자 범위, 유가족, 치유휴직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때는 고용노동부의 재원이 됐고 이태원 사건은 행안부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객기 참사 이거는, 물론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각 부처들과의 의견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전례,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범안 그때는 1년 이내에 신청, 6개월 이내 휴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여객기 참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이 점이 있기 때문에 또 트라우마 발현 시기가 한 3년 이내에 발현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휴직 기간도 종전에 6개월 선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 연장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가급적이면 유가족 이런 부분의 편에 서서 그래도 조금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해 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비교표를 바탕으로 해서 특별법 안의 개별 조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은 유사한 내용의 조문을 묶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 비교표 1쪽입니다.

첫 번째 1쪽, 제명·목적 그리고 2쪽에서 3쪽까지 나와 있는 정의 규정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략적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법률안들은 이번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 권리보장, 진상규명, 재발방지 등의 용어를 포함한 특별법 제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규정에서 역시 공통적으로 희생자 추모, 피해 지원,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규율사항으로 하고 해당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 사고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서삼석 의원안이나 문금주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도 목적 규정에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 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각 법률안들은 법률안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2.29 여객기 사고 참사에 관한 내용의 경우에는 각 법률안들이 활주로 이탈, 활주로 외

벽에 충돌, 착륙 도중 폭발 등과 같이 일부 정의 규정의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공청회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유가족 측이나 국토부 측에서 의견을 내신 바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예비보고서에서 발표한 사고조사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와 피해자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의 법률안에서 유사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진숙 의원안이나 서삼석 의원안의 경우에는 희생자에 대해서 참사 당시 사망하신 분 외에 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까지 희생자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3쪽, 피해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안에서 희생자의 유가족 그다음에 생존하신 분의 가족 외에 참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분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의원안이나 전진숙 의원안, 서삼석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렇게 피해인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설치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피해지역의 정의에 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만 피해지역을 규정한 법안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로 피해지역을 규정한 법안 그리고 전라남도로만 피해지역을 규정한 법안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해당 피해지역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기재부, 문체부, 전라남도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2차 가해에 관한 정의, 유가족단체에 관한 정의 등도 포함하고 있는 법률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먼저 국토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명과 관련해서 이수진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등 입법례와 또 피해자, 공동체 회복이라는 입법 목적을 감안할 때 이수진 의원안의 제명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목적 부분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 이수진 의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문금주·서삼석 의원안과 같이 사실관계나 책임 소재의 진상규명을 명시하는 것은 현행 항공 사고조사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고·참사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김은혜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일단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유가족 의견과 같이 사조위의 예비보고서를 참조해서 사고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고 정의 규정에 여객기가 활주로 외벽에 충돌했다든지 착륙 도중에 폭발했다는 내용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희생자 정의와 관련해서 김은혜·이수진·문금주·권향엽 의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번 여객기 사고는 특정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해서 사고 당시 여객기에 탑승해서 사망한 사람에 한해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피해자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김은혜·이수진 의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사고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피해자 범위로 확대 포함하는 문금주·전진숙·서삼석 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이태원법에서 나온 얘긴데 도심 내 불특정 다수가, 군중이 밀집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태원법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3페이지입니다.

피해지역에 대한 용어 정의입니다.

이수진·전진숙 의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전문위원회께서 말씀하셨듯이 희생자의 다수가 광주·전남 거주지에 약 88.2%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전남 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차 가해 정의 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은혜 의원안에 동의를 하고요.

유가족단체에 대해서는 이수진·전진숙·권향엽 의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서삼석 의원안은 인원수를 100인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유가족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다음 행안부.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다음은 행정안전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피해지역과 관련해서 이수진·전진숙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이번 특별법안의 제정 취지가 대규모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종합·연속적 회복 지원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해자 수가 많고 참사의 영향이 집중된 광주·전남으로 피해지역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혹시 기재부……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저희는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사상자 및 그 가족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해서 기재부는 특별재난지역, 무안군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른 세월호 피해구제법이나 이태원참사법도 특별재난지역으로 한정해서 적용된 사례를 따르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혹시 다른 부처 답변 주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 지금 정의 규정에서 보면 사고·참사 부분 서술 관련된 내용이 차이도 좀

있고 백원국 차관님께서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원인이 개입되는 표현은 좀 지양하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항철위 예비보고서가 일단은 나와 있고 유가족들도 여기에 따라서 좀 규정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논란이 있는 이 사고·참사 부분을 항철위 예비보고서에 따라서 규정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실질적인 논의의 실익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차관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단 무엇보다도 사고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보고서에 따라서 정의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지금 법안에 나와 있는 활주로 외벽에 충돌했다든지 또 착륙 도중에 폭발했다 하는 부분은 달리 해석될, 혼선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성 차원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보고서를 토대로 정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준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원인이 특별법 이후에 밝혀지는 거라고 한다면 사고·참사와 관련해서 그냥 날짜 등으로만 좀 특정해서 명시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원인과 관련된 내용을 정의 규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인 실익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논란 있게 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간단히 그 부분 의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전진숙입니다.

정의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부분의 의견은 탑승자 중 희생자에 관련된 사람들, 희생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희생자의 유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같이 존비속이라든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말고 그 이외의 사람들하고 같이 기거를 했거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건지를 몰라서, 희생자의 유가족 또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지금 부상당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문제. 그리고 가족 이외에 피해자로 인정할 경우가 있는 대상이 생길 경우에는 이분들을 인정을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거고 그런 절차는 지금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단 희생자라고 하는 분들은 딱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칠십아홉 분이 한정돼 있고요. 피해자라고 정의하는 부분은 여러 안이 있습니다만 국토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희생자의 유가족 또 부상자, 부상자의 유가족 이렇게 정의하는 김은혜·이수진 의원안에 동의한다는……

○**전진숙 위원** 아니, 그 말씀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고로 인하여, 제가 지금 정의 부분의 희생자라고 하는 부분의 범주를 조금 넓혀서 이야기를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고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이거에 대한 극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혹시 사망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희생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까? 왜냐하면 가족이나 이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엄청난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관님?

그냥 개인적 트라우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벌어진 나하고 무관한 사고이지만 그 주

변에 가서…… 그날 보면 자원봉사자들, 공무원들 또 취재했던 사람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 현장을 보고 계속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시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고요. 일단 거기 사고 수습에 투입한 분들은 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건 또 개별법에서 공상 처리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전진숙 위원** 일차적으로 공무원이 갔지요. 공무원 아닌 사람들도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밖에서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진숙 위원** 그렇지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그날 당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취재하셨던 기자분들도 계셔요. 그렇지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사고의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단 말이예요. 그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런 인과관계를 찾기가 쉽지 않고요. 지금 이 항공기 사고로 나온 희생자는 공간적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고 그 희생자와 관계되어 있는 유족들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정의를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일 이게 플러스알파로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아마 피해자의 범위를 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진숙 위원** 상당한 시일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그 연관관계가 있어서 사망에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를 본인이 다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순간의 오래된 기억과 사실관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들이 실제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에 기재부가 지금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에 벗대어서 피해지역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안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그 지역 무안군에만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러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특히 이태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분들의 지역적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거는 조금 다르게 희생자들 중에 77명은 전남이고 81명은 광주에 해당되는 집중된, 희생자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것에 벗대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분포나 이런 것들을, 분포도를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기재부한테 질의드린 겁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분들이 대체로 무안공항을 이용하다 보니까 전남·광주 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부분은 맞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집중도를 벗어나서 타 시도에 있으면 그분들은 또 소외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있으면 또 타 지역까지 다 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직접 인과관계 비용들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희생자의 현저한 숫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는 저한테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대체로 저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요 아까 정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참사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명을 이수진 의원안으로 12·29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하는데 굳이 뒤에 착륙 중 활주로 이탈이라는 구체적인 이런 정의를 넣지 말고 꼭 정의가 필요하다면 부칙을 달아서 사고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정의 부분을, 사고조사 끝난 그 결과치를 여기에 다시 넣는 걸로 그렇게 부칙을 달아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뒤에 가서 다시 검토할 부분인데 7쪽의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그 부분에 가면 유가족들도, 이게 국제법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니까 유가족들한테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법을 준수해서 결과를 보고 하자, 이게 유가족협의회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정의 부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먼저 사고·참사와 관련해서 항철위 예비보고서에 ‘방위각 시설물과 충돌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충돌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오는 것이니만큼 그때 적절하게 조치하면 되고, 현재 법의 상태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가 되고, 기재부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을 무안군으로 한정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를 포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88%의 피해자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도 이 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으로도 실질적인 직접적 피해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광주와 전라남도에 사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피해지역에 넣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김대식 위원 하나만 좀 궁금해서……

○소위원장 이수진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김대식 위원 하나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피해지역 있잖아요. 피해지역이 지금, 민주당의 서삼석 의원도 지역구가 무안이고 여기 전진숙 위원님하고 정준호 위원님도 광주고 문금주 위원님은 또 고흥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다 이게 민주당에서 의견 일치

가 안 맞아. 무안군으로 한다 했다가 광주·전남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또 초등학교가 무안군 출신인데, 이게 서로 안 맞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토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전진숙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대식 위원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이 안으로 지금, 국토부 안이 이것 아닙니까?

○전진숙 위원 광주·전남.

○김대식 위원 광주·전남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 거지요?

○소위원장 이수진 예.

○전진숙 위원 동의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김대식 위원 동의하는 거지요? 동의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잠깐 그걸 놓쳐서.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한말씀드리면요 사실 피해지역에 대한 정의는 피해지역의 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예산상의 조치 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또 경제 활성화 시책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김은혜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피해지역을 무안으로만 정해 놓고 경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침체지역이라는 걸 또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침체지역이 그러면 어디냐에 대한 용어 정의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 내용이 김은혜·문금주·서삼석 의원안이 같고요, 이수진·전진숙·권향엽 의원안이 같습니다. 크게 이게 대별이 되는데 만일에 김은혜 의원안처럼 가려고 하면 침체지역이라는 용어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피해지역이 있고 또 침체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시책을 하고 이게 연결되는데 현재로서는 침체지역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어서 그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많은 의견 주셨는데 복잡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1페이지는 제 법안대로 제명이라든지 목적 사항은 크게 이견 없이 그냥 가시면 될 것 같고, 사고·참사 정의 부분도 이달희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구체적으로 또 정준호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이건 전문위원께서 안을 한번 만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리고 희생자와 피해자 정의와 관련해서도 유가족분들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희가 참사 당시 사망하신 분이 희생자고 피해자는 탑승자 중 희생자 외의 사람 그리고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이 정도로 정의를 해 봐 주시고 뒤에 또 지원하는 것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하는 것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지역은 세월호·이태원 참사랑은 다르지요. 여기는 분명하게 전남과 광주로 피해자분들의 분포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걱정하는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몇 분이 계셔서 거기가 피해지역으로 이렇게 포함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

다.

그래서 다수가 살고 계시거나 생활하고 계시는 곳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견이 있기는 하나 제가 보니 오늘 기재부 얘기 빼 놓고 여기 계신 소위 위원님들은 전남과 광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려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기재부도 이의 없으시지요?

○전진숙 위원 잠깐만요.

정의 관련해서 희생자·피해자에 관련된 것은……

○김대식 위원 전진숙 위원님, 기재부 이야기 잠깐만 한번……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하는 게 원래 광범위하게 분포하기보다는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려는 게 당초 이 제도를 만든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무안이라는 곳에서 항공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무안 지역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감당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하고 전남이라는 상위 광역지자체가 돋는 부분이고요. 그것만으로도 또 안 되니까 특별재난지역을 통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광역지자체와 국가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무안이 이러한 국가적인 큰 재난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충적인 성격으로 이 제도가 운영이 돼 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광주·전남 전체적으로 펼치게 되면 원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는 이 제도의 취지에 비춰 봤을 때 좀 광범위하게 설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피해지역에 어디를 넣을 것인가까지 이렇게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저희가, 그것은 정부가 앞으로 필요하면 더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도 피해를 입었는데 저희가 피해지역으로 그 지역을 안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피해지역의 정의예요. 이것까지 기재부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피해자·희생자에 관련된 정의에 대해서, 희생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규정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 이 자리에서 더 논의를 요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피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여기까지만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입니다.

다음 이어서 4쪽 피해자의 권리, 5쪽 국가 등의 책무, 2차 가해 방지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피해자의 권리 부분은 김은혜 의원안을 제외한 이수진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서삼석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까지 모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태원 참

사 특별법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금주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서삼석 의원안의 경우에는 사고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특별법안 내에 규율하고 있다 보니까 해당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라는 부분을 피해자의 권리에 추가하고 있어서 특조위 사고조사 관련한 사항 등과 함께 연계해서 피해자의 권리 부분을 어떻게 규정할지 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5쪽의 국가 등의 책무 부분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의원안들이 유사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피해지역들에 대해서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예산상의 조치, 정보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금주 의원안, 서삼석 의원안의 경우에는 역시 진상규명이라는 용어를 함께 포함해서 특조위 사고 진상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차 가해 방지와 관련한 국가 등의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 6쪽에 나오는 2차 가해 금지의무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문금주 의원안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벌 규정을 별도로 규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참고 자료에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만 각 법안들은 이와 별도로 특별법에서 가중해서 처벌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와 유가족 측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수진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참고로 문금주·전진숙·서삼석 의원안의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에 대해서는 항공 사고의 특성상 객관성·공정성 관점에서 신중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7페이지하고 같이 검토하시지요. 같이 검토하셔야 앞엣것하고 같이 풀릴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맞는 것 같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특조위까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7페이지,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금주 의원안과 서삼석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고 그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청문회 실시에 관한 사항, 조사 위원회 활동 시 업무의 위임·위탁, 보고서 작성, 자료기록단의 설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이를 통한 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실 때, 21쪽을 보시면 이수진 의원안과 전진숙 의원안에서 국회가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위원과 사고조사관을 2명 추가로 위촉 또는 임명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금 현재 있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신뢰성과 독립성, 객관성 등을 좀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고조사 특례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특조위를 구성해서 사고 진상규명을 하도록 할지 여부 또는 다른 방안으로 현재 사고조사위원회에 국회가 사고조사위원이나 사고조사관을 추가로 위촉할지에 관한 문제, 이 두 가지는 함께 논의하시고 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의 목적 규정이나 국가의 책무 규정에 진상조사 관련한 사항을 포함할지를 연계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마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단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권리 또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ICAO 국제 규정상 피해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사고는 특성상 이해관계자가 많습니다. 보험사까지 다 이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만일에 피해자가 참여를 하게 되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차 가해 방지에 대해서 김은혜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홍보·교육, 방지대책의무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다음에 이어지는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법 등 법체계를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김은혜·이수진·권향엽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진상조사에 우선 적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와 같은 논리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7번,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조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특별조사위를 설치하는 것은 조사의 혼선이나 지역, 국제적 신뢰도 저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행정안전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7번, 12·29여객기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 등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6번, 사고조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조사위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고조사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임명은 장관 등 행정부 권한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혹시 정부 측 더 의견 내실 분은 없으신 거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이경화** 죄송합니다. 2차 가해 방지 관련해서 처벌 규정 관련 의견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차 가해 금지하는 의무 규정……

○**소위원장 이수진** 조금 마이크 가까이 놓고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이경화** 2차 가해 금지하는 의무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금지규정 관련해서 이 2차 가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명확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대체로 이런 2차 가해라는 게 명예훼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명예훼손 관련해서 현재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있고 정보통신망법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통망법에 의하면 7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한데, 현재 제출된 법안에 의하면 허위사실과 진실한 사실 적시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을 상한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적시한 경우에는 정통망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더 중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굳이 이런 경우를 상정했을 때 법을 새로 제정할 실익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 방금 법무부에서 의견 주신 내용 관련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7년 이하 징역으로 돼 있어서 오히려 처벌 범위가 더 넓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 가해와 관련된 명확성 원칙 걱정해 주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현재 지금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안에서 사회적 참사라든지 피해 집단이 특정지역으로 이렇게 국한이 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특수성이 고려가 돼 가지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기존 일반 명예훼손 사건보다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양형기준 같은 게 혹시 마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계신 건지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제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이경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일정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제가 명예훼손 부분은 현재 말씀하신 사회적참사 관련돼서 가중 양형기준이 있는지 찾아보고 오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에 관련해서 따로 공식된 기준이 없더라도 각 법관이 재량으로 정해진 범주 안에서 가중요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참사라든가 국민적 주목을 받는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법무부 주신 의견은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은 특수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좀 국한해 가지고 희생자들이 대거 분포가 돼 있는 그런 특수성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사고 수습 과정에서도 이미 특정지역과 연계돼 가지고 명예훼손적 발언이 이미 수차례 확인이 돼 가지고 무안공항에서 관련된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형기준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 본 특별법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형벌 규정을 규정을 하는 게, 실익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부

분을 고려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특별법에 반영하는 식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지금 저희 정보통신망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데, 집단사고는 사실 대구지하철 참사처럼 다 항상 집단사고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일반 개인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별법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경우 특별법에 처벌 규정을 두는 건 그렇고 이게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사고 수습 과정에서 현장에 다 있었지만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고 사고 수습하는 데 불필요한 경찰 인력이나 이런 게 동원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을 조금 고쳐서 이런 집단사고라든가 국가의 아주 중대한 이런 것에서는 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하나의 그냥 12·29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도 뛰든 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에 저희들이 앞으로 국가적인 큰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은 가중처벌한다, 이 규정 하나를 제안하고 그 법에 넣어서 앞으로 어느 지역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별법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사실 저도 이렇게 특별법에 형벌 조항을 담았는데 이달희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지역을 특정하고 대형 참사와 관련해서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에 형벌 조항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보통신망법이랑 형법을 강화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법안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것은 그렇게도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고조사 특례 21페이지랑 7페이지랑 6페이지를 동시에 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한꺼번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지금 2차 가해에 대한 가중처벌은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동의하고 가장 적절한 법안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 책무나 2차 가해 방지, 준비된 법안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진상규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법안에 넣자라고 하는 의원님들이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나 그러나 진상규명을 넣었을 경우에 오히려 객관성이거나 합리성, 투명성에 문제가 돼서 유가족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빼더라도 유가족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은 잘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가해 방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법안을 내 주셨는데 김은혜 의원안을 보면 국가·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법적·행정적 지원 포함 적극적 조치 의무라든지 홍보·교육 실시 의무라든지 하는 것을 넣어 주셨는데요. 2차 가해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실 이런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은혜 의원안이 잘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또 의견……

○**이달희 위원** 차관님, 혹시 국토위에 진상조사에 관한 또 다른 법안이 지금 하나 제출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진상규명은 아니고요, 사조위법.

○**이달희 위원** 예, 사조위법.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사조위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어서, 계류돼 있고요. 거기에서는 사조위의 소속을 국토부장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것 위원을 좀 더 늘리는 것 이런 내용들의 법안이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사조위 자체가 지금 국토부 안에 공직자들이 함께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져서 그걸 국무총리로 가고, 지금 국토위 안에서 이 법령 전체가 개정이 돼야 할 거니까 우리 특별법에서는 유가족들의 의견대로 이 부분은 좀 빼고 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유가족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박철 변호사가 지난번에 공청회에 와서 다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소위원장 이수진** 차관님, 제가 공청회 때도 그렇고 질문을 드렸어요. 저희가 다 마음은 같아요. 유가족분들도 혹여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어쨌든 사조위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걱정을 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독립성 문제, 일단 이 사고가 생기고 국토위 실장님이나 당연직을 다 그만두시거나 업무에서 제외하시거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전에도 혹시 이런 사고가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나, 사조위에서 그렇게 위원 배제한 적이 있었나 그랬더니 없었더라고요, 이번에 처음이더라고요. 그것은 이게 굉장히 큰 참사고 또 ICAO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결론이 최소 1년 반 이상이 걸립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 자리에 차관님도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고 사실 국토위 관계자 분들께서는 계속 인사 이동을 하시고, 결론이 날 때까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에요. 저희 의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사조위 지금 구조대로 이렇게 갔을 때 별문제가 없을지, 그런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즉답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공청회 때도 ICAO라든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아마도 실무적으로는 거기에 질문하는 것조차도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십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조위 관련해서.

그래서 특별법 안에 유가족께서 개입하는 건 그렇지만 그렇다면 객관적인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해서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제안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방금 이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조위 법 개정을 위해서 국토위에 법안들이 몇 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20년간 발의가 됐어도 논의가 안 됐어요, 관련 법이. 그래서 관련해서 정부의 의지라든지 국토위가 곧 이 법안을 가지고 논의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특별법에 사조위 구성과 관련해서 안 담고 갈 수가, 어려운 거거

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책임 있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위원장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ICAO 규정상 사조위가 독립돼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고 그것을 판단하는 평가지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5개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적으로 일단 독립이 되어 있느냐, 또 조사의 자율성이 있느냐, 또 보고서 발표 권한이 있느냐, 이런 사항들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느냐, 또 하나는 독립적인 예산과 인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는 다 구비가 돼 있고요. 예산과 인력 부분은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항공실 내의 예산에서 사조위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독립성 또 인력도 국토부에서 사조위로 넘기고 사조위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한 독립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부에 맡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2명을 국회에서 요청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해 왔던 체계가 있는데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을 이렇게 추가하는 부분들이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어떤 오해인 거지요?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위원을 추천하는 건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 위원 추천에 대해서 위원과 조사관 2명을 추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던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이 사고에 대해서 위원 두 사람을 더 추가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사관을 임명을 하게 되면 조사관이 바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행안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채용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자격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경쟁을 통해서 선발이 되고 선발된 인원이 또 6개월 동안 교육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두 사람을 이렇게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들을 말씀하시는 데 어쨌든 예산이든 인사든 사조위의 독립성을, 사조위 구성과 관련해 국토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안을 통해서 그것을 다 보완하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이시고, 그렇게 되면 ICAO의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후 1년 반 뒤에 이 사건 조사가 어떤 결론이 나도 이 결론에 대해서 다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조위가 아주 객관적이고, 저희가 전혀 조사에 관여할 수도 없고요.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속 들어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당연히 믿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될 사람들은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 참사와 관련해서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지불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래서 그쪽에서 인정할 만큼 우리가 준비를 하고 곧 국토위에서 통과시킬 것이다, 국토위에 올려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특위에 분명하게 보고가 돼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 사조위 법에 대해서는 국토위에서 논의를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 또는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논의를 거쳐서 개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게 맞다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토부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보고를 해서, 우리 전문위원이랑 논의를 한번 해서 다음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 주시지요.

위원님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이달희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권영진 위원장님이 국토위 여당 간사기도 하니까 여야 국토위 간사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서 국토위에서 사조위 관련해서 문제를 매듭짓는 방향으로 하는 게 조금 일관성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국토위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국토위가 만약에 늦어진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 특위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더 없으시면 이 부분은 넘어갈까요?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참시만요.

국토위에서 되게 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역할인 것이지 안 되면 여기에 담는다. 여기에 담아서 희생자들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면, 과잉 입법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위원장님께서 단계를 잘 째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앞서 피해자의 권리 부분은 이수진 의원님 안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 등의 책무도 마찬가지로 하고 2차 가해 방지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예.

○**전문위원 임종수** 다음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첫 번째,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문금주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서삼석 의원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경우에는 앞서 피해자의 범위를 어떻게 인정하실지에 관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요. 아까 전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해자 중에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피해자 외에 추가로 피해자 인정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피해자 인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둘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추후에 최종적으로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

다.

두 번째, 지원·추모위원회입니다.

지원·추모위원회는 문금주 의원안을 제외한 각 법률안들이 모두 다 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위원장을 2명으로 할지 즉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으로 할지 아니면 국무총리 1인 위원장으로 할지, 그다음에 위원들을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 등으로 할지 아니면 유가족단체가 추천하거나 유가족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할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서 정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행안부, 유가족 측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원단과 자문단의 문제입니다.

지원단은 유가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데 각 법률안에서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나 해당 조직을 지원조직이라고 표현하면서 규정한 방식이 있고요, 피해자지원단이라고 명명하면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구분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지원조직 부분이나 지원단 부분이나 취지나 내용이 사실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일 취지의 내용으로 조정을 해서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는 피해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김은혜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자문단의 경우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피해자 및 유가족단체들을 지원하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수진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고 특히 유가족 측에서 아주 긴요히 필요한 규정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0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의 원칙은 각 법률안이 모두 다 대동소이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 차이점은 문금주 의원안에서 지원의 원칙 규정에 국세 납부기한 유예와 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고요. 추가로 공무원인 피해자 및 공무원인 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공무원연금에 있는 유족연금을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함께 두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혁신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8페이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사고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범위를 부상자, 희생자, 부상자 가족으로 조기에 확정하고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원·추모위원회 관련입니다.

김은혜 의원안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위원장 수는 2인이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위원장이 총리기 때문에 민간위원

이 대신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두 사람으로 하는 것이 맞고 위원 수도 20인 이내가 적정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원위원회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것은, 당사자기 때문에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은 객관성 우려로 곤란하다. 다만 추모사업 관련해서는 유가족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유가족의 뜻이기도 합니다.

심의 사항 관련해서 김은혜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수진·전진숙·권향엽 의원안에 교육환경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월호의 특성이, 단원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돼서 비롯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번 여객기 사고는 피해자 교육비 지원사항으로 국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원단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김은혜 의원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원조직과 지원단의 기능이 일부 중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보체계에 대해서는 김은혜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자문단입니다.

제정안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문단 운영은 필요한데 좀 더 폭넓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금 10인 이내로 돼 있는 인원을 늘려서 20인 이내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원의 원칙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세 납부기한 유예와 가산세 면제는 현재 국세징수법을 통해 가지고 이미 납부 유예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또 공무원 피해자에 대한 유족연금 전액 지급과 관련해서는 인사처 의견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다음 행정안전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원·추모위원회의 경우 만약 두 위원회가 둘 다 설립이 된다면 위원회의 기능 통합 측면에서 1개의 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9페이지의 지원단 관련 사안입니다.

김은혜 의원안의 경우 지원단 사무기구의 구체적인 역할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통상 법률에서는 지원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단 관련 조직이 포함된다면 지원조직의 설치 관련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전진숙입니다.

방금 국토부차관님께서 9페이지의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의견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지금 인원 구성 관련해서 저희가 10인 이내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20인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20인으로 구성된다

면 대략 어떤 방식을 고민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단 유가족 측에서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자문단 숫자가 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현재 국회와 유가족 대표단과 협의를 통해서 열여덟 분의 자문위원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후 추가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열여덟 분이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중복성 신증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금주·전진숙·서삼석 의원님이 이 부분을 낸 의도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추모위원회에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원·추모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유가족을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취지에 맞고 그리고 유가족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니만큼 그렇다고 하면 김은혜 의원안대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도 유가족 측에서 지원·추모위원회, 특히 지원위원회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지원사업에 교육환경 개선 포함을 이수진·전진숙 그리고 권향엽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교육환경이 세월호 특별법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교육환경 개선 내용을 보니까 학교시설 설비 등과 관련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이 빠져도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혹시 교육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단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넣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 대통령령으로 만들 때 이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의 여러 사업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유가족협의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대통령령에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원의 원칙 등과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인혁처에서 의견 주신 데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국세 납부기한 유예, 가산세 면제 관련해서는 이미 국세징수법에 있고, 특히 공무원과 관련해서 어떤 취지로 제안이 됐는지는 이해를 하나 지금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공무원연금제도를 흔드는 큰 사안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지금 8페이지의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관련된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앞에서 희생자와 피해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희생자는 그렇게 하더라도 피해자의 범위는 더 넓혀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판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넣은 거고요. 이건 앞의 조항과 맞물려서 이후에 저희가 다시 재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여기 피해구제심의위원회랑 또 지금 백선희 위원님의 의견 주신 지원·추모위원회에 넣을 수 있는 문구 조정이 가능한지 그것 까지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전문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장 2인으로 해서 김은혜 의원안대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거의 큰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세월호가 특별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들어간 거라 이것도 삭제하는 것에 큰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조직, 지원단 이 명칭을 지금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통일하자는 거지요?

○전문위원 임종수 사실 이수진 의원님 안에도 보면 지원조직이라고 해서 규정하는 항이 하나 있고요, 피해자지원단이라고 해서 규정하는 별도의 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 사회적참사 관련한 특별법에 지원조직과 관련한 내용이 사실 있어서 그 내용을 참고로 했을 때 대부분 지원조직이라고 해서 자료의 수집이나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 그다음에 위원회에 행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정도의 근거만 가지고도 사실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어차피 국토교통부랑 행정안전부 측에서, 정부 측에 조직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이 지원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그 의견을 전문위원이 파악해서 협의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원장 이수진 예, 그러면 협의해서 안을 한번 만들어 봐 주시고요.

유가족을 지원하는, 아까 지원·추모위원회에서 지원·추모위원회 지원조직에는 유가족분들께서 본인들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다. 그러나 추모위원회 추모 분과 쪽의 활동은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구분해서 하실 수가 있는지……

○전문위원 임종수 한 가지,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으로 어떤 분이 참여하실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게 8쪽에 있는데 이수진 의원님 안하고 전진숙 의원안 그다음에 서삼석·권향엽 의원안의 경우에는 그 위원으로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유가족이 임명이나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추모 분과위원회만 참여를 하더라도 전체 위원회 위원이라야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거든요, 구조상. 그래서 그냥 유가족이 이 지원·추모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사실상 분과위원회에서는 추모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기로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면 일단 유가족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은 법에 규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디테일에서 세부 분과를 나눌 때 유가족은 추모위원회 추모 분과 쪽으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실제로 구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에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입법기술적 사안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위원회에 들어가야만 분과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포함을 시키려고 그러면 전체는 반영을 하고 지금 현재 김은혜 의원안 법안 21조 5항

에다가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유가족 등을 추모사업 분과위원회에 임명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예, 한번 상의해서 그것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리고 지원단이 통합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하더라도 추모위의 안건을 정리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을 텐데 이게 유가족협의회 의견이 성실하게 잘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지원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중복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원단의 구체적 업무에 대해서 법안에서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설립·설치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지원단과 자문단은 국토부에서 아까……

○소위원장 이수진 그건 따로 의견 주신 게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저희 국토부에서 의견 드렸고요. 지금 지원조직과 지원단 간의 기능과 역할이 일부 중복될 소지가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

○소위원장 이수진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지원단과 지원조직이 중복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지원단을 꾸려서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런데 저희가 법에서 또 이렇게 지원단을 꾸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중복된다는 그런 의미시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일부 중복될 개연성이 보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임종수 위원장님, 지금 여기 9쪽에 나와 있는 지원단 지원조직이 현재 국토부가 이미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지원단과 이 특별법으로 만들고자 하는 지원단이 중복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소위 심사자료 61쪽 보시면 상단의 이수진 의원님 안에 ‘지원·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지원단을 둘 수 있다’라는 6항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67쪽을 보시면, ‘7조(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 등)’이라고 하는 7조에 보시면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부에 피해자 지원단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서 보신 지원단과 지원조직과 이 지원단이 사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러니까 지원·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는 파트 그리고 지원·추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파트 이 두 가지가 앞의 조문과, 6조 6항과 7조 1항이 사실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선 사회적참사 관련 위원회에서 지원조직을 두었던 사례를 보면 사실 하나의

지원조직을 통해서 위원회를 지원하고 관련 지원·추모사업을 추진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상 특별법에 담을 내용, 지원조직과 지원단을 하나로 정리해서 조직을 두면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알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저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지원조직하고 지원단하고 사실 비슷하게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원조직이라고 하는 건 지원·추모위원회가 있고 그 지원·추모위원회가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원조직이고요.

○전문위원 임종수 예, 맞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리고 지원단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지원단이 있고 여기 이수진 의원 안에 있다시피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유가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맞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래서 이 두 조직을 보고 저도 일부는 조금 중복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것을 일원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 지원조직이 잘 구성이 돼서 지원·추모위원회의 활동을 잘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원단이 있어야지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단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 목적을 잘 새기셔서 무조건 일원화하기보다는 지원단을 저는 가능하면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든 지원단이든. 그런데 이 법률을 보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단은 국토교통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이익 되게 하는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 지원단이 꾸려져 있지만 이게 다부처 업무잖아요, 행안부도 있고 복지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딱 하나, 민원을 말하면 원스톱으로 따다다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국토부에 있다 보니까 동격 부처의 지원단장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협조는 해주시겠지만 순조롭게 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서도 컨테이너 안치, 이동 안치실 설치할 때 있어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연락해서 국토부에서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행안부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또 동의를 구하고 그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분절되어 있다 보니까 속도가 떨어지고. 사실은 피해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게 위원회나 지원단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것보다 하나로 있는 게 피해자 수요자 입장에서는 훨씬 만족도 높고 일의 처리도 빠른데, 지금은 오히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나뉘어져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국토부 중심으로 하는데, 그러나 이게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는 기구잖아요. 그런데 2개가 이렇게 같이 가면 과연 계속, 그게 더 효율적일까? 피해자에게 이익일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둬서 그게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법률안을 제안한 취지도 거기에 방점이 있는데 현재는, 지원하고 추모하고 하는 이 위원회에는 유족이 참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지원단은 유족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능하는 데 방점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유족이 참여해서 유족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맞다 싶고.

또 세월호참사 특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세월호법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처 검토가 안 됐습니다.

○김미애 위원 어차피 이걸 오늘 결론 낼 건 아닐 것 같으니까 좀 더 고민을 해서, 이건 정부를 위한 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원화를 하되 거기에 맞춰서 조금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백선희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전진숙 위원님.

○백선희 위원 저는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동의하는 부분에 조금 보충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부하고 유가족협의회하고 신뢰 관계가 좋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런 지원단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신뢰하고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김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사실은 지원하기 위해서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여러 부처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보건복지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늘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 교육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이것을 잘 풀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저희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행안부에 두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부처 간 협력을 위해서. 그래서 행안부라든지 다른 부처에 지원단을 두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원조직과 지원단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2개의 성격을 보면 지원조직, 위원회를 지원하는 지원조직은 사실은 행정지원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런데 지원단의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사업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원단이 존속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단이 존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도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2개의 조직이 또 너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효율성이 있어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위원회라고 하는 행정을 주로 지원하는 이 안에, 지원단이 사업조직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혼자의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행정의 일원화도 가능하고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그런 방안도 가능한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국토부, 행안부, 정부 측의 조직구성 원칙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위원회 지원과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업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능까지 다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조직을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전문위원님이 방금 말씀 주셨는데요. 아무튼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방식과 또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 2개가, 저는 2개의 조직을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아니면 하나로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 두 가지로 원활하게 하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각 조직을 별도로 가졌을 때의 역할 구분, 역할과 내용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다음 자문단의 구성은 지금 국토부에서 20인 이내로 의견을 주셨는데 유가족분들께서는 그래도 30인 이내까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20인 내외면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30인까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국회 측하고 유족 측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8개 분야로 나누어서 한 분야에 두 분씩 또 어떤 분야는 더 필요하면 세 분까지 했을 때 한 스무 분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20인 이내.

그리고 지원의 원칙에서 국세 납부 유예랑 공무원 배우자 유족연금 전액 지급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담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위원장님 한 가지, 저희 자문단 구성에서 지금 현재 이수진 의원님 안하고 전진숙 의원님 안에서 보면 자문단을 구성할 때 국회가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전문가, 유가족단체 또는 유가족협의회가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전문가, 이건 숫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법에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 측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와 국회와 유가족 측의 의견을 들어서 이미 어느 정도 풀을 구성하고 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국회 5인, 유가족단체 5인 이렇게 숫자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문단 구성할 때 유가족단체 또는 유가족협의회 의견을 들어서 자문단을 구성하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만 좀 표시를 하고, 국회 5인 유가족단체 5인 이렇

게 숫자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명시하는 것은 좀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진숙 위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지원조직과 지원단에 대한 성격이나 규정에 따라서 다 지금 흐트러지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문위원 임종수 지금 말씀드린 건 자문단……

○전진숙 위원 아, 자문단에 한해서?

○전문위원 임종수 예, 자문단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자문단만.

○전문위원 임종수 유가족들 지원하고 각종 내용을 자문해 주는 부분인데 그것도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문구를 만들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시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종수 그러면 11쪽, 12쪽, 13쪽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쪽에 나와 있는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각 법률안들은 참사로 침체된 지역 또는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의 특별 지원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공통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수진 의원님 안과 권향엽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참사로 인해 영업활동이 제한되고 그에 따라 입은 손실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또 권향엽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무안공항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항으로 만들어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중기부, 문체부, 전라남도, 무안군 등에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른 법률을 통해서 반영하자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금 사항입니다.

지원금은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그리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지원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의 경우에는 모든 특별법안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생활지원금을 받았을 때 소득이 증가하는 부분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소득이 증가하는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 산정 시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다라는 규정은 다 있습니다. 다만 소득 산정 시 제외하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자는 법안이 있고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 법안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기타 선행 사회적참사 관련한 특별법안들에서는 공통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만 소득 산정 시 지원금을 제외하도록 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금을 주자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들 담고 계신데 다만 일부 명칭과 지급 형태에 대해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3쪽, 심리 지원, 치유휴직 그리고 치유휴직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 지원

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법률안들이 공통으로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심리적 증상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검사·치료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은혜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피해자 외에 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심리상담과 검사·치료 지원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족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은혜 의원님 안, 이수진 의원님 안, 전진숙 의원님 안, 권향엽 의원님 안에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번 참사 구조·수습·복구·치료 등등에 참여한 사람까지 심리상담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치유휴직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법률안들이 신청기한을 1년으로만 제한할지 3년까지 늘려 줄지, 휴직기한을 6개월로 제한할지 1년까지 늘려 줄지에 관한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치유휴직으로 인해서 불리한 처우나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치유휴직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모두 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필요한 사안으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대체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11페이지,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관련해서 일단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지역 정의와 연계해서 대상 지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손실보상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직접적인 영업 제한을 했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손실보상 차원이 아니고 항공산업 업계에 대해서는 관광 활성화 등 특별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안공항 안전성 및 활성화 지원 부분도 신중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법의 목적이 유가족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지원에 있기 때문에 공항에 대해서는 별도 정부 측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발표를 할 건데 거기에 일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 15세 미만 희생자 지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심리 지원에 대해서도 김은혜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치유휴직에 대해서는 지금 법안이 큰 틀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1년 내 신청해서 6개월까지 허용해 줄 것이냐 아니면 3년 내 신청해 1년까지 허용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일단 트라우마의 어떤 발현 시기, 시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월호하고 이태원법은 사실 1년 신청, 6개월 휴직기간 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트라우마 발현 시기를 감안했을 때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관계 부처에서 또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복지부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하고 심리 지원이 이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공감한다는 생각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아마도 생활지원금이 오게 되면 이게 혹시나 소득에 잡혀서 기초생활보장이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선례로서 세월호 피해구제법과 이태원참사법 모두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하는 기간 동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선례에 따라서 김은혜 의원님, 문금주 의원님, 서삼석 의원님 안처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에 따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13쪽, 심리상담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심리상담 대상이 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은 피해자하고 참여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김은혜 의원님 안에서 피해자 플러스 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세월호도 똑같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장 넓게 할 수 있는 피해자 플러스 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고 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까지 포함할 수 있는 김은혜 의원님 안하고 또 이수진 의원님 안에 있는 그런 내용 또 전진숙 의원님, 권향엽 의원님 그 밑에 있는 참여한 자까지 포함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피해자신데 김은혜 의원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플러스 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넓게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 모두를 포함해서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를 보시게 되면 심리상담 같은 데 ‘국가등’이 여기에 대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검사·치료는 ‘국가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도 광주라든지 전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국가등’으로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법무부랑 고용노동부 의견 주세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고용노동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직이라는 것은 사업주하고 근로자들 간의 고용관계를, 이 법안의 취지에 따르면요 강제로 사업주들한테 휴직을 하게 되면, 사인 간의 계약에 사실 국가가 개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청기한을 그동안 이전의 법들이 1년 6개월로 한 이유는 사업주들한테 너무 막연하게 기간을 늘려 주는 것은 사업주들이 굉장히 불확실성에 놓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선례적 입법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기간 문제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또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기존의 입법례를 따라서 하고 있고요. 다만 세월호 때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태원법 때의 어떤 재정 문제들은 서로 조금 약간의 초점이

안 맞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국토부에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은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이경화 법무부입니다.

법무부는 15세 미만 희생자 지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일부 안의 경우 문구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은혜 의원안 같은 경우 소위 자료 85·86쪽 보시면 안 9조 1항 3호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으로 특정을 하셨는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공제 약정을 체결해서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으로 특정이 되면 지방공제회와 약정한 경우는 포섭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험자 또는 계약 형태를 한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또한 문금주 의원안 같은 경우는 소위 자료 87쪽 보시면 ‘국가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보험금에 상당하는 지원이 아니라 보험금 자체를 국가등이 지급한다라는 것이 좀 법리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회 이수진 기재부요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부처랑 의견이 같아서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충적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손실보상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재정을 지원을 할 때 생계 곤란부터 일차적으로 지원하고 여력이 되면 영업과 관련되는 이차적인 수입원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스텐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업손실과 관련되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민간보험의 영역이거든요. 재정은 항상 보충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데 정부가 바로 영업손실에 들어가게 되면 여행사나 이런 주변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어, 가만히 있으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 주네?’ 이렇게 되는 유인 구조가 생기게 되고 보험의 역할이 후퇴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무안공항 안전성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공항 사고가 난 다음에 국토부 항공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국가 전체 공항 차원에서 지역 공항들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서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안공항만 어떻게 하라라는 규정보다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활성화 관련해서도 거점 항공사를 유치하는 거를 국가 등에 지우는 부분은 절박함은 알겠지만 국가의 기능을 좀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세 미만 희생자 지원과 관련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게 당장은 조금 불합리한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상법을 봤더니 15세 이하는 보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규정이 생겨났는지 연원을 좀 추적을 시켜 봤더니 15세 이하를 보험에 들게 하면 영유아 살해의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

어서 그때 당시에 규정을 안 했는데요. 이번에 항공사와 같이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보니까 결국은 그 우려가 법의 흄결로 귀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법에서 15세 이하 영유아 살해 우려 때문에 보험에 들지 못하도록 한 상법 개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면 이 불쌍한 15세 미만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법이 개정이 된다면 국가가 한시적으로 이번에 한해서 흄결 상태인 이 피해자들은 구제해 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 한 두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치유휴직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기간을 6개월에서 좀 늘려야 된다라는 부처 의견들이 좀 전반적으로 나와서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치유휴직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어느 부처에서 하는 게 맞느냐,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국토부보다는 고용부에서 그냥 전문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고용유지비용은 국가가 부담을 하는 것인데 전문적으로 휴직 기간과 관련된 관리 업무는, 국토부가 과연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할 때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의견을 하나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권향엽 의원님 법률안에 보면 무안공항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특단 대책과 거점 항공사를 포함한 얘기들이 좀 나와 있었는데 부처 간 적극적으로 의견 주신 건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국토부차관님 나와 계시지만 지금 항공 안전대책과 관련된 혁신대책을 이제 곧 발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안에 지금 권향엽 의원님 법률안에 있던 내용들이 포함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논의가 진행이 됐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 무안공항에 대해서 활주로도 연장을 해야 되고요,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업이고 이번에 부족했던 로컬라이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을쯤에는 다 마무리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 공항에, 무안공항뿐만 아니고 다른 타 공항도 같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발표했던 내용 신속하게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또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았던 내용들은 4월 달에 혁신대책에 모두 담아서 발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주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혁신대책에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주로 안전이 해당이 될 겁니다.

○**정준호 위원** 혹시 제주항공 관계자분도 오늘 여기 출석하셨나요?

○**소위원장 이수진** 아니요.

○**정준호 위원** 안 돼 있고요.

차관님, 국내에 지금 국제공항이 6개가 있는데 거점 항공사가 없는 공항이 유일하게 무안공항인 거는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그렇습니다. 무안공항만 없습니다.

○**정준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아마 권향엽 의원님이 법률안을 내신 것 같은데, 제주항공 관계자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가 이런 사건을 계기로 차라리 무안공항 거점 항공사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없는 자리에서 그렇긴 한데 국토부에서도 어쨌든 이 법안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거와 관련된 내용은 좀 고민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 제주항공은 아시다시피 제주에 거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강제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어쨌든 국토부 입장에서 6개 국제공항 중에서 거점 항공사 없는 공항이 유일하게 무안공항이라는 것도 적극 유념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예.

○**소위원장 이수진**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이기일 차관님, 이렇게 재난과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때 그 트라우마가 발동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특별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의료 지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의료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전진숙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치유휴직이라고 하는 것도 법 시행 이후에 최소한 3년 이내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했고. 휴직 기한도 되게 심각한 분들이, 지금 처참한 시신도 보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최대한 좀 늘려서, 기간을 연장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금 국토부 관련해서 정준호 위원님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 법안을 저희가 1페이지 논의하면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련된 특별법으로 이렇게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이 피해구제라고 하는 법이 단순히 어떤 보상금을 지불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심리적인 치유를 하자고 하는 게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안공항은 희생했던 분들, 피해자분들이 생각하는 관념 속에 되게 위험한 공항이라고 하는 게 인지되어 있어요. 이 또한 전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를 테면 권향엽 의원이 안전성 강화라고 하는 것을 되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무안공항이 안전한 공항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기 위한 방식이 단순히, 4월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발표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들에 심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항목은 들어 가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로컬라이저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 내고 이런 정도의, 시설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공항 무안공항’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좀 되어야 된다, 물론 합의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리 기차 사고 났을 때, 지금은 이리의 기차 사고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전방위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공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명칭, 이거는 그냥 순수 제 의견입니다. 명칭 변경부터 시작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체크를 저는 다 해 봐야 된다, 무안에 관련해서. 그래야 그 공항이 살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무안공항을 이용을 했을 때 이제는 이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희생자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고요. 안전한 공항을 만들고 다시 재개항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백선희 위원님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선희 위원** 경제 활성화,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특별지원방안으로 중기부에서도 검토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과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 산정 시 지원금 제외 기간이 1년에서 제한 없음으로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복지부차관님께서 특례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쨌건 1년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례 기간 어떻게 정할지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료지원금에 대해서, 배상책임 주체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으셨는데 저는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심리상담과 관련해서 김은혜 의원안이 가장 넓은 범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지부차관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안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심리상담과 관련해서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월호 피해구제법 관련해서는 한 10년 그리고 추가로 5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10년으로 기간을 정하고 필요할 경우에 세월호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한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치유휴직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국토부차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재는 관련된 법이 1년과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또 정부 측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객기 참사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한데 실질적으로 희생자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1년 이후에, 1년 되는 시점에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1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3년 이내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개월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트라우마가 지속되는 기한을 고려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유휴직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치유휴직 6개월이나 1년도 중요합니다마는 치유 프로그램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치유휴직을 혼자서 내지는 가족과 6개월 1년을 보낸다라고 해서 반드시 치유될 것인가, 저는 치유 프로그램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안에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치유휴직을 하는 기간 동안 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심리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법안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나중에 개정을 할 때 치유휴직 같은 경우에 지금 고용보험 대상자, 근로자에게 한정된 것이니 만큼 자영업하시는 분 그리고 고용보험 비적용 대상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조치도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치유휴직을 담당할 고용노동부, 국토부 또 기재부까지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좀 체크해 가고 싶습니다.

국토부차관님, 우리가 그동안 치유휴직을 전체 국가 재난에서 사용한 선례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지원해서 1년에 6개월 했다, 어디 이런 선례가 있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 세월호하고 이태원 사례가 있고요.

○이달희 위원 이태원 사례에서 몇 분이 신청하셨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 이태원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럼 세월호는 어떻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세월호는 제가 알기로 총 스무 분이 신청을 했고요.

○이달희 위원 거기가 1년에 6개월이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1년에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무 분 중에서 1, 2, 3, 4, 5개월까지만 해서 그만두신 분이 있고……

○이달희 위원 6개월 다 채운……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최대 6개월까지 채우신 분은 20명 중에 한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20명에 들었던, 고용노동부는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나요? 여기에 사업주 지원이 있고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지원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는 예산이 가장 고민일 것 같은데요. 어느 주머니에서 받아다가 이 프로그램을 운용하느냐인데, 복지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긴급생계지원이 있지요. 고용노동부에도 국가적인 대규모 재난이나 이런 것 관련돼서 긴급고용지원 자금이나, 이렇게 세이브해 놓은 긴급 자원이나 이런 데서 갖다 쓸 수 있는 재원이 있나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세월호의 정확한 숫자 말고 금액은 갖고 있지를 않아서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옛날에 세월호 어떻게 했는지 전임자들한테 죽 물어보니까 원래 재정 당국에서 재정을 마련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이행이 잘 안 됐더라고요. 안 돼 가지고 사실 우격다짐 비슷하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기금은 아시다시피 사업주들이 보험금으로 내는 거거든요. 사업주들이 보험금으로 내고 혹시나 경영이 어려울 때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 쓰는 돈인데 국가 재난적인 여기다 돈을 쓴 거예요. 사실 회계질서상 안 맞는 거지요.

○이달희 위원 예, 그래서……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래서 그 뒤에 이태원 할 때는 그 부분을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행안부에서 재정을 마련하고, 어차피 행안부에서 이태원 대상자들에 대한 대상 그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을 그 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도 확정하고 금액도 확정하고, 그래서 그 금액과……

○이달희 위원 거기도 1년에 6개월, 내년부터 받아서……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기간 문제는 또 추후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고 최소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정부 전체적인 방침을 단단하게 하겠고 다만 아까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느냐 물으셔서, 그래서 그 뒤에는 행안부에서 재정을 마련해 주면 집행은 저희들이 전국에 고용센터라든지 이런 곳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 부처에 정리된 바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청회 할 때도 3년 정도가 가장, 트라우마 치료나 이런 게 3년 뒤에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 우리가 3년을 법에 담으려고 하고 6개월에…… 차관님, 6개월 해 놓고 또 다른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있으면 1회 더 연장하는 그런 정도로 치유휴직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국토부차관님을 쳐다보고 하는 이유는 이 재원을 행안부처럼 그렇게 마련해서 고용노동부 출 것인가, 고용노동부는 심부름은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은 떠맡고, 이것은 돈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가 이번에 책임지고 이 부분을, 3년 안이니까 할 수가 없다면 기재부에서 고용노동부하고 해서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 기금 같은 그런 기금을 하나, 이참에 법을 만들어서 세이브하는 그런 기금이 고용노동부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고용노동부랑 기재부, 국토부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국토부 먼저 말씀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단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관계 부처 간에. 고용부의 입장도 제가 이미 들었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세월호는 그랬지만 이태원 때 조정이 됐으니까 이태원 선례를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요. 또 여기 기재부도 나와 계시니까 예산 당국과도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제일 타당한 안이 나올 수 있는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예.

○소위원장 이수진 마지막으로 김미애 위원님이 질의 신청을 하셔 가지고 김미애 위원님까지 하고,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김미애 위원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15세 미만 희생자 지원에 대해서 사실은 특별법에,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때도 해당 규정은 없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대부분의 제정안에 포함된 이유는 유가족의 요청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만, 각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 내지 공제회에 가입했는데 15세 미만자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 특별법에 좀 담아서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런 규정을 도입할 때는 이유가 있었고, 그런데 특별법에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파악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15세 미만자가 몇 명인지? 몇 명이던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8명입니다.

○김미애 위원 8명?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김미애 위원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에 피해자 일인당 지급하는 게 맞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예컨대 부 또는 모가 사망했는데 15세 미만자가 3명이다 그러면 3명에게 각각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개인당입니다.

○김미애 위원 희생자당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딱 특정되어 있고 그러면 희생자당, 15세 미만자가 8명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희생자의 배우자가 있거나 15세 이상자가 있으면 또 적용 대상이 아닐 거거든요. 그렇게 추려 보면 제가 알기로 한 2명 정도. 거기에 파악한 것 있어요, 그 내용?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게 저렇게 다 감안해서 8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김미애 위원 8명입니까?

그러면 특이하네요. 미성년자를 다방면으로 특별히 지원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내용에는 미성년자는 세 가정에 아이가 4명이었거든요. 제가 파악한 게 좀 다르네요. 어떻게 다른지 추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재원의 문제인데, 이것은 입법정책적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참사와 좀 다른 게, 돌아가신 분들을 안 보면 모르는데 보고 나서는 트라우마가 상당하거든요. 그 가족이 아니어도 상당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시신이 174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은 그 고통이 상당하고 특히나 15세 미만자는 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민안전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결단해서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상법도 한번,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서 이 개정안을 좀 발의해야 되겠다 싶고.

그다음에 치유휴직 관련해서 기간과 지원의 문제인데 기간은 아까 국토부차관님도 말씀하셨고 복지부차관님도 말씀하셨나, 트라우마의 특성이 발현 시점이 이후에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간은 한 3년으로 하되 휴직기간은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1차는 6개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소명하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다만 제가 어떤 고민이 되냐면 이 대상자가 이직을 할 경우에, 현 상태라면 사업주가 이미 알고 있어서 괜찮은데 이직을 할 경우도 고려해서 이 규정 안에, 3년으로 할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알아야 되잖아요. 고지의무라든지 뭔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구태여 피해자가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하든 누가 하든 이것을 알려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이 피해자와 사업주가 트러블이 생길 여지를 범을 만들 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위원장 이수진** 오후에 안 오실 거예요?

○**김미애 위원** 이 정도만.....

○**소위원장 이수진** 오후에 더 질문하세요.

○**김미애 위원** 오후에 또 합니까? 다음에 또 하시지.

○**소위원장 이수진** 혹시 정부 측에서 답변 주실 게 있으신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까 백선희 위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예.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첫 번째, 맨 뒤의 심리 지원에 대해서 저희도 대상은 포괄적으로 다 인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여기에 있어 가지고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데, 세월호 피해구제법에서는 그 기간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태원은 이게 시행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시행령 위임된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기간은 기본적으로는 10년이 되고 세월호는 금년도 6월 달인가 해 가지고 5년이 또 연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에 규정할지 아니면 시행령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법에 따라서 일단은 시행령으로 했었는데 같이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지원금을 보면 지금 세월호 같은 경우도 4인 가족 한 200만 원 정도, 내용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태원은 아직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됐을 때 그 달의 소득에 산정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1년이나 있으나 없으나 그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기존의 세월호하고 이태원 특례법에 따라서 1년 이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에 준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것은 더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 당사자는 두 분밖에 계시지 않고 사실 이분은 산재로 인해 가지고 산재 치료를 받으시게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유가족들인데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가해행위하고 손해배상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청구권보다 주로 위자료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법에 집어넣었다가 이번에는 그것을 철회했던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고용노동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104페이지에 보면 세월호 때는 92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 휴직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 법안이 '신청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장마다 또는 회사마다 금액 자체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직한 경우도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 지원에 관련한 것은 아마도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게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참으시지요?

○**김미애 위원** 다음에 하지요. 오늘 말고 다른 날 하시면 안 될까요?

○**소위원장 이수진** 오늘 일독은 하기로 저희가 얘기를 해서……

○**김미애 위원**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왜냐하면 병원 예약을 해 놔서.

○**소위원장 이수진** 저희가 앞으로 시간이 나기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오늘 안 하시면 목요일 날 또 회의 소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일독을 하셔야 행정실에서도 정리를 한번 해 드릴 수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심사하시는 데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특별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심사를 다 마치지 못한 비교표 11쪽부터 13쪽까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법안 심사 이어 가기 전에 이제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 오전 심사 관련해서 기재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재부 과장님 이시지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예.

○**소위원장 이수진** 기재부에서 말하는 재정 원칙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당연히 존중하고 또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고려해서 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 심사에서 준 의견을 보면 특별법 제정 취지와 무색하게 소극적인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법상 15세 미만인 자의 사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특별지원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 현행 상법에서 이런 점을 해결할 수 없

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취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예.

○소위원장 이수진 그런데 이런 취지를 잘 아시면서 상법이 개정되면 지원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혀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재정 당국이라 하더라도 좀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현행 상법을 개정해서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에 대해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상법의 개정은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일단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구제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예, 위원장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예. 그래서 지금 이 특별법안 심사하는 자리의 취지에 맞게끔 좀, 왜냐하면 저희가 상법을 여기에서 개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이 전례 없는 항공 참사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피해자를 국가와 사회가 소극적으로 임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법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지역도 희생자와 피해자가 집중된 지역이 뻔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존 재난안전법상의 특별재난지역만 피해지역으로 하겠다는 것도 우리가 특별법을 만드는 제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없으니까 특별법에 저희가 특별하게 피해지역을 명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는 입장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난 참사에 대한 국가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의견 제시하실 때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쪽 13쪽, 더 의견 없으십니까?

○이달희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우리 국토부도 그렇고, 아마 중기부랑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조건 곤란하다 안 된다라는 말씀보다는, 이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안 가봤던 길을 가게 된 거지요. 다양한 상황이 생기고 참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하나 쟁겨 보시고 각 주무 부처, 중기부와 조금 더 긴밀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토부.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무안공항 폐쇄에 따라서 영업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는 입점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금 면제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항공기 취급 업체가 있습니다, 지상조업하는 업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를 지금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래서 아마 4월 달에도 정부가 대책 마련을 하는 것에 대한,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 플러스 조금 더 중기부가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우리 차관께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예.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14쪽 먼저 진행하기 전에 11쪽부터 13쪽 사이, 위원님들께서 점심식사 시간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봐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예.

○**전문위원 임종수** 11쪽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 대상 지역에 관한 문제는 거의 위원님들께서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걸로 말씀을 주셨고, 해당 피해지역을 어떻게 정하는지 또 정의 조항에서 광주·전남 지역으로 주로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안을 마련해서 다음 소위에서 한 번 더 확정하는 걸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부분하고 무안공항 안전성 강화 부분은 정부 측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한 후에 다음 소위에서 한 번 더 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원금,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지원금 파트는 대부분 소위에서 논의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다음 소위 때 이어서 확정하실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지원 치유휴직, 심리 지원 파트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하셨고 치유휴직 파트의 치유휴직 신청기한과 휴직기한에 관한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정부 측 의견을 조금 더 들어 보고 다음 소위에서 최종 결정하시는 걸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14쪽 교육 지원 부분부터 16쪽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교육 지원 부분입니다.

특별법안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해서 교육비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의원님 안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법안들은 모두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각 법안들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참사 당시를 기준으로 탑승하신 분들 중에 사망하신 분들이나 생존하신 분들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 중에 참사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수진 의원님 안하고 전진숙 의원님 안 두 안은 피해자 중에 재학 중인 학생 플러스 입학이 확정된 학생, 자녀까지 포함하는 걸로 교육비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희생자의 미성년 자녀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안이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향엽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학교 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까지 포함해서 입학금, 수업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교육부 그리고 유가족 측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이수진 의원님 안하고 전진숙 의원님 안, 권향엽 의원님

안에서 참사 당시 피해자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그 학생들이 대학 등에 진학하는 경우 해당 대학에서 입학 정원의 1% 내 별도 정원을 두어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 교육부, 유가족 측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5쪽, 각종 복지제도 관련 법률에서 정한 것에 대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는 피해자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간주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 지원법에 따른 특례도 함께 규정해서 참사로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친권자의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긴급복지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그다음에 미성년 보호대책 부분은 각 법안들이 모두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지원 파트에서 법안 중에 두 친권자 중의 한쪽만 사망한 경우 또 모두 사망한 경우로 나눠서 규정되고 있고 문금주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희생자의 성년 자녀로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 보건복지부 쪽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쪽의 일상생활돌봄 지원, 법률 지원, 금융부담 완화에 관한 규정을 각 법률안들이 두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 내용들은 선행 이태원 참사 관련한 법이나 세월호 피해 관련한 특별법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 일상생활돌봄 지원 규정의 경우에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 중인 일상돌봄 지원사업의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수진 의원님 안, 전진숙 의원님 안, 권향엽 의원님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단 먼저 국토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교육 지원 관련해서 친권자 사망 유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구체적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특별전형과 관련해서는 재난피해자 간의 형평성, 공정성 등의 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가족 측 입장도 신중 검토 입장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미성년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좀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상자가 한 분인데 이미 복지부에서 유가족 건의를 반영해서 조치 중에 있기 때문에 입법 필요성이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16페이지 일상생활돌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소관 부처가 지금 복지부인데요, 복지부에서 지금 의무 주체가 국가로만 되어 있는데 지자체도 포함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률 지원, 금융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교육부에서 답변 주시면……

○**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 이주희**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입니다.

먼저 제가 소관하고 있는 특별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이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전형은 사실은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이나 그다음에 현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학생 미충원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교육비 지원 대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입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 관련해서 김은혜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참사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 지원이 세월호법 사례를 참고할 때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으로 수정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복지부.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복지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보호대책도 바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에는 지금 장애인분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활동보조를 받고 계시고 한 분은 안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활동보조 지원제도에서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가구 환경이 혹시라도 독거가 되거나 취약이 됐을 경우에 아니면 본인을 제외하고 가족이 사회활동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등급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침 이분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2월에 신청을 해 주셔 가지고 3월 20일 날 심의가 됐고 4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월 310시간을 보장을 받았는데 변경 후에는 월 440시간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입법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활동보조 제도 내에서 상황 변경을 고려해서 이미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돌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강제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상돌봄 안 하는 시군구가 33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임의규정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은 국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강제규정으로 두면서 다만 지금 시행 주체를 ‘국가 등’으로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강제규정은 두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대로 두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김은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참사 당시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돼 있고, 비교 대상인 항목들이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미취학아동들이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피해하고는 좀 동떨어진 거리가 있었는데 이번 사태는 제가 통계를 뽑아 보지는 않았지만 워낙에 가족 단위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미취학아동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두텁게 보호를 해 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하고 단순 비교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자분들 중에 미취학아동이나 이런 분들의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한번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답변.

○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의 위원님 말씀 부 내에 돌아가서 내부 논의를 통해서 좀 궁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막 시작해서, 오전에 했던 게 넘어와 버려 가지고 앞으로 잠깐 돌려서 10페이지 관련해서 짧게, 여기 특별법 내용에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특별법안에 좀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청소년들이 유족 공무원연금을 받게 되지요. 조부모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받는 건데 이 유족 공무원연금이 지금 19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유족 공무원연금이 19세로 제한되어 있고 국민연금이 25세로 제한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19세에 나와서 바로 활동을 하거나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되게 많이 놓이는 것도 사실이고 이 청소년들이 어리거나 그러면, 이 공무원 유족연금은 조부모들이 받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노령연금이 중지가 되고 실제 당사자인 희생자의 피해자인 가족에게 뭔가 용돈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손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부행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법 안에다가 공무원 유족연금에 한해서는 19세가 아니라 27세,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25세가 아니라 27세까지는 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기일 차관님, 지금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셔서 그러기는 하겠지만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마도 유족연금이라고 하면 사실은 유족인데 보통은 공무원, 국민연금법 같은 경우에는 40% 내지 60% 정도를 받게 됩니다.

○전진숙 위원 배우자는 60%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기간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저희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혹시라도 특별법에서 새롭게 논의가 된다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진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교육비 지원 대상, 김은혜 의원안이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 주신 것 같은데요. 참사가 12월 달에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 법 기간을 참사 당시로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참사가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그 시기를 좀 고려를 해 주시고, 법이 실효성을 발휘하는 그 시점에 초중고 학생인 경우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검토도 있었는데요 교육부의 검토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법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법이 지원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다른 법안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건 대학생이 돼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전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가족들도 특별전형은 신중 검토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형평성이나 특혜성 논란이 사회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유가족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질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 일단 복지부에서 등급변경을 한 것은 적정하게 조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장하는 시간이 440시간으로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시간이 충분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등급변경 이외에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돌봄 지원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국가 단위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차관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지자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야만 유가족에게 원활하게 일상생활돌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그동안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이 계속 유보적이었습니다. 우리 회의할 때마다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계속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존의 세월호나 이태원 그 법 사례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세월호는 희생자 자체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재학생들을 지원하면 됐던 것이고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이번의 12.29 같은 경우에는 직계비속, 그러니까 부모 중의 한 분이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남겨진 아이들의 교육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학교에 장학금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특별법에 잘 담아 놓으면 교육부가 시행령을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 누가 집행을 하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밑의 특별전형 부분은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법에 의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유가족 직계비속 자녀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나라가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시행령에 담든 아니면 우리 법에 정확하게 담든 해서 이 부분은 교육부가 마련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유보적이었고 또 오늘도 ‘돌아가서 협의해 보겠습니다’인데 다음에 오실 때는 여기 시행령에 정확하게 무엇을 담아서 이 교육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담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거의 의무교육이니까 괜찮고 대학 지원 할 때 대학 등록금을 지금처럼 두 학기만 지원할 것인지 전액 장학으로, 저희들은 4년 보장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교육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전형 관련해서는 유가족분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오히려 유가족분들이 혹시 특혜라든지 이런 것으로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또 언론이라든지, 사실 이 안에 담긴 뜻은 다른 것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보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은 특별전형을 뺀다 하더라도 방금 위원님들 다수가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 담길 수 있도록 다시 부처 간에 논의를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것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과 교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포함해서 대책을 다시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장애인 지원은 이게 불필요하다라는 건가요? 복지부가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두 분이 계신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활동 지원에 이미 사정변경을 고려할 수 있는 조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입법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백선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라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하고 협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참사로 부모를 잃거나 같이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 지원이 안 되면 사실은 한 2배 3배의 고통이 따를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 보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그러면 장애인 지원 파트는 특별법에서 조문은 제외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예.

○전문위원 임종수 그다음 이어서 17쪽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부터 18쪽 트라우마센터 까지만 먼저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안들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필요한 고려사항 그리고 피해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국가등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각 법안들이 모두 담고 있습니다. 심리상담과 건강 복지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에는 방문서비스도 제공하며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 국가 및 사단 또는 재단과—유가족단체를 말합니다—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트라우마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혜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은 이번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 김은혜 의원안의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진숙 의원님 안하고 권향엽 의원님 안은 설치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 주체도 김은혜 의원님 안은 국가 및 지자체로 되어 있고 전진숙 의원님 안과 권향엽 의원님 안은 국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권향엽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설치되는 트라우마 치유시설을 다른 사회적 재난으로 트라우마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국토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정안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 기능과 방문서비스에 대해서는 김은혜·문금주·전진숙·서삼석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협의 대상에 대해서 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행안부 의견이 있습니다. 협의 대상이 지금 지자체가 하는 경우 국가와 유가족 사단 또는 법인과 협의해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단과 재단은 제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김은혜·문금주·전진숙·서삼석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재정 지원에 대해서 재량과 의무가 되어 있는데요 이태원 입법례와 같이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필요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량규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트라우마센터에 대해서는 김은혜 의원안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복지부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행정안전부 의견입니다.

방금 국토부차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체 복합시설의 기능과 방문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다음 복합시설의 경우에 피해자 유족뿐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 회복과 활력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국가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특별법안의 사단·재단 또는 유가족단체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기존 세월호 피해구제법의 사례를 참고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그래서 사단·재단 또는 유가족단체와 협의하는

규정은 기존 세월호 피해구제법의 사례를 참고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복지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트라우마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사실 세월호가 2014년이고 포항 지진이 2017년도입니다. 이때는 별도의 트라우마센터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신건강복지법을 2018년에 개정해서 그 뒤에 국가트라우마센터가 18년도에 생겼고, 영남권역이 19년도 그리고 강원·호남·충청권역이 21년 6월 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청회도 보니까 이동훈 교수님이나 함승희 교수님도 재난 시마다 이것을 설치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일단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22년도에 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에도 앞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는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체 복합시설의 협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해지역에 광주시하고 전남 지역을 포함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트라우마 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같이 회복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어서 자자체를 협의 대상으로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는 지난번 공청회에서 전술인들의 진술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트라우마센터를 별도로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임의규정이 적절할 것 같고 트라우마센터를 별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전술인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지금 복지부차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국트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권역별로 트라우마센터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하고 사실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어떤 전달체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센터하고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같이 협업을 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의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어떤 적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시에는 우리가 앞서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에 심리상담과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이 공동체 복합시설에서 일부 필요한 트라우마와 관련된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방금 백선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가 및 유가족단체, 유가족의 의견을 조금 받아서 수용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알아서 하는 경우에 나중에 꼭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시설을 계속 만드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금 '국가 및' 하고 자자체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오늘 오신 차관님들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이태원 참사하고 관련한 이야기를 자주 하시고 그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는 해당사항이 없다 안 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굉장히 듣기 불편해요. 왜냐하면 세월호도 그렇고 포항 지진도 그렇고 12.29 여객기 참사도 그렇고 일정 정도 거기에 다수가 발생을 하지만 지역적,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원 참사는 또 조금 다릅니다, 상황이. 그런데 그걸 빗대서 자꾸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게 되게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혹시 이기일 차관님, 여객기 참사하고 관련해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늘 공청회에서도 드리고 하는데 재난 대응과 관련한 심리체계가 완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여객기 참사하고 관련해서 심리 지원을 받는 분들이, 방금 말했던 그런 재난과 관련해서 집중치료를 할 수 있는 상담 인력 투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외부 500여 명의 상담 인력을 지금 투입해서 연계 고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는 호남권역 트라우마센터입니다. 지금 전체로 호남권역에는 이것 말고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 호남권에 있는 센터에도 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 지원도 지난해 같은 경우 1421명 해서 4500건 정도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포항이라든지 또 세월호 하실 때는 국가적인 심리 지원체계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2개 체계도 만들었었고 또 저희가 안산 단원고에도 그런 트라우마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18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센터를 계속 이렇게,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서울 엠센터에 있고 나머지도 네 군데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고 마침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지난번에 무안공항에도 나주에 있는 호남 센터분들이 오셔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각 권역별로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을 커버링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 놓고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난이 발생돼서 그걸 또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참 저도 고민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전진숙 위원 고민하지요, 저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그것 또 하나를 설치해서 가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지금 현재 피해자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 있는 분들은 단순히 광주·전남을 넘어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 지역구에도 열여덟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한 번 더 추적해서 하면 직계비속들은 다 흩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꾸 걱정이 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대형 사건,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아까 9명이 근무하는, 일반 재난과 관련해서 다 지금 심리 지원을 하고 있는, 나주 정신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전진숙 위원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이걸 다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별도의 트라우마센터, 그게 마음회복지원센터든지 트라우마센터든지 이름은 어떤지 상관이 없지만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는 저는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라우마라는 게 1~2년 안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10년 몇십년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광주도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5·18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 이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전진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강조를 하신 것이 그들만의 특성이 있다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트라우마의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5·18 관련된 집중치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공청회 있었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트라우마센터가 별도로 필요한가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하고 관련이 되는 것인데요. 일단 전달체계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역 트라우마센터와 그리고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프라로 갖춰져 있는데 어떤 트라우마센터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렇게 이번 여객기 참사의 트라우마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그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별도 트라우마센터를 만약에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복지부에서는 이 여객기 참사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전문 인력을 육성을 하시고 그리고 티오를 확보를 하셔서 광주·전남 지역에 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계신 분들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훨씬 더 심층적인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 주시게 되면, 사실 심리상담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멀리 있는 나주로 가기 어렵고 또 다른 멀리 있는 곳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접근성을 고려를 했을 때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티오를 확보를 하시고, 그들이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시켜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도 이분들은 재난으로 인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트라우마센터가 아니더라도 아까 마음회복지원센터라든지 또 혹시라도, 여러 가지 전문 인력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트라우마센터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여기 기획재정부 관계관님도 나와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협의할 사항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우리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방법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에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차관님,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요. 그게 유가족이고 희생자 가족 중의 누구일 텐데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정신과 치료라든가 이런 걸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희생자들은 전남·광주에 거의 80~90% 있지만 또 유가족들은 전국에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그러면 내가 트라우마를 겪을 때 제일 먼저 일반 병원의 정신과 치료라든가 심리상담 이런 걸 원하지 않을까요? 굳이 막 센터에 가서, 꼭 나주에 있거나 거기에 가서 해야 되는지.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 나오셨을 때 정책관님 나오셨을 때 물었을 때 이게 유가족이라도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광주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원하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때 건보 지원이 거의 100% 된다거나 이게 꼼꼼한 개인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지 센터를 통한, 그냥 인프라를 차려 놓고 거기만 가라 이런 건가요?

지원체계가 만약에 트라우마센터가 새로 생기면 어떻게 지원되고, 또 저같이 그냥 병원에 가서 정신과 심리치료를 좀 받고 그걸 건보가 유가족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 준다 이렇게 고쳐 버리면 전국을 다 쓸 수 있는 건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지금 보니까 유가족분들이 680명이십니다. 그리고 이 중에 아마도 광주하고 전남이 200명 이상 가장 많이 계시고요, 보면 다른 데도 1명에서 10명 이상씩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아마 광주 같은 경우도 우리 직원들이 다 불어 가지고 해주고 있고요. 혹시 그분들이 가게 되면 그 지역의 정신건강센터에 있는 정신전문요원들이 케어링을 하게 돼 있는데요. 혹시라도 아마도 그분들이 병원에 가고 싶다라고……

○이달희 위원 지금은 일대일로 공무원이 불어 있으니까 그렇지 한 몇 개월 지나면 개인이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앞에 보면 사실 생활지원금 조항이 있고 의료지원금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지원금이 되고 그 대상이 되게 되면 그분이 거기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사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 있거든요. 건보에 있는 급여 될 수 있는 것 그건 건보에서 당연하게 해 줘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달희 위원 그건 그냥 유가족 아니라도 가능한 거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의원급 같은 경우에는 30%가 본인부담이거든요. 본인부담 30% 하고, 예를 들면 나머지 비급여가 혹시라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조항에 따라서 특별법이 되게 되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법에 의료 지원을 우리가 전국 어디 있더라도, 제가 광주에 있어도 서울의 세브란스병원에 와도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나머지 비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오히려 맞춤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12페이지 거기에 있는 의료지원금이 그런 조항입니다.

○**이달희 위원 예.**

○**소위원장 이수진** 방금 이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용이 가능하게 원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이제 의료 지원이 지금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12쪽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12페이지 의료지원금 이런 것에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이달희 위원** 그래서 거기를 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의료 지원에다가 정신과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좀 구체화시켜놓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의료지원금의 목적이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 이 정도면 꽤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정리를 한번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임종수** 위원님들 17~18페이지 논의하신 내용에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동의하시고 정부 부처에서도 제정안들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는 현재 각 제정안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설을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할지 협의하는 대상으로 김은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 국가 및 유가족 측인 사단과 재단 또는 나머지 의원님들도 다 국가 및 유가족단체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할 대상을 국가 외에도 유가족단체를 다 포함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고 말씀하신 바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공히 유가족 단체의 의견을 듣고 이런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소위원장 이수진** 이게 그러면 사실 협의라는 게 직접 들어와서 협의하는 것과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이 반영되게끔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 이렇게 좀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만드는데 유가족들의 의견을 전혀 안 들으실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예, 당연히 유가족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소위원장 이수진** 본인들이 공동체 시설을 이용하시고 꽤 오랜 시간 자조모임도 하실 거고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가족분들이 의견이 수렴이 안 되거나 그러면 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들어 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유가족들의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보완하실 수 있겠어요?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도 유가족 의견을 당연히

들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존에 두 법이 있었는데 세월호법과 이태원법이 서로 다른 내용이라서 그런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유가족들의 의견을 들으시지요. 그걸 직접 이용하실 분들이 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야 정부에서도 오히려 진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전문위원 임종수 그리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할지 ‘지원하여야 한다’로 규정할지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국가가 비용 지원을 할 때는 보통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이런 복합시설 같은 경우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선행 사례들을 봤을 때 대부분 국가 비용 지원이 들어가서 비용 지원 규정의 일반적인 선례를 따르셔도, 재량으로 규정하셔도 무방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와 조금 더 협의를, 정부 측에서 협의를 해서 법률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지 아니면 기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지 그 부분은 다음 회의에서 이어서 한번 논의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전문위원 임종수 그러면 이어서 19쪽부터 추모사업 추모시설 그리고 유가족단체로 볼 수 있는 사단 및 재단에 관한 사항 그리고 21쪽의 상황보고 및 자료제출까지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의 추모사업입니다.

각 제정안들은 이번 참사의 추모와 관련해서 추모사업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김은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해당 추모사업의 목적을 추모와 항공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라고 규정하고 계시고 그 외에 다른 제정안들은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로 규정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취지는 동일하게 가져가고 계십니다.

다만 김은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추모사업을 실시한다고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이수진 의원님 안부터 다른 의원님들 안의 경우에는 이 추모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법률에 하나씩 다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모공원의 건립, 추모기념관의 설치, 추모비의 설치, 추모행사의 개최, 추모를 위한 문화예술행사 그리고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법에 어떻게 담을지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추모사업을 시행할 때 국가가 국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재량과 의무사항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숙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이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피해자에 대한 장기 추적연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추모시설의 경우에는 주로 내용은 그 명칭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과 위치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것인가 그 두 가지 사항 외에 이 추모시설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특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례 규정에 관해서는 각 제정안들이 다 대동소이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큰 차이라고 보면 추모시설의 위치를 어디에 설치할지, 즉 ‘피해자 역 내 참사 현장 인근’ 이렇게 이태원참사법 선례를 따라서 설치 위치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사단 및 재단, 유가족단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안하고 이수진 의원님 안, 문금주 의원님 안, 권향엽 의원님 안에서 유가족단체들 즉 유가족들로 구성된 사단 또는 재단에 관해 특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사단과 재단을 구분하지 않고 사단 또는 재단을 설치할 때 그 설치되는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해서 국가가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해당 사단 또는 재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특례와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른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사단과 재단을 구분해서 사단은 유가족협의회라는 명칭을 특징을 하고 해당 유가족협의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된다라고 규정을 하시면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재단에 관해서는 재산 출연을 통해서 재단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문금주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유가족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계신데 해당 유가족협의회가 사단이냐 재단이냐, 민법상 법인의 어떤 형태인지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다만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진숙 의원님 안과 서삼석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사단법인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재산 출연을 통한 재단법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시면서 10년 동안 출연 보조 가능하고 그 목적은 추모 및 대형 재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권향엽 의원님 안은 이수진 의원님 안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과 재단에 관해서는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그리고 유가족 측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쪽, 상황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수진 의원님 안과 전진숙 의원님 안에서는 국회 그리고 지원·추모위원회, 유가족협의회 각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이나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상황보고를 요청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시면서 동시에 이에 대해 각 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응하지 않으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회, 지원·추모위원회, 유가족협의회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는 사항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사고조사 특례는 앞서 논의한 바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국토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추모사업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항공 안전사고로 국한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보다는 예방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도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모 내용에 관련해서는 지금 김은혜 의원안은 내용이 없고 이수진 의원안을 비롯해서 나머지 의원안은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는 필요할 것 같고요. 추모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유가족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항공 안전사고의 예방·훈련시설은 추모사업 내용에 포함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자체가 시행할 때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탄력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 임의 규정으로 하는 김은혜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추모시설과 관련해서 명칭에 대해서는 지금 김은혜 의원안에 사단과 재단 협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가족 뜻에 따라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단과 재단의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치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지원·추모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에서 특정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치 특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은혜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유가족 권리와 재정 당국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했을 때 유가족단체가 사단을 설립하고 공익적 사업을 수행했을 때 최대 10년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다만 공익법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공익법인의 간주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사 입법례도 없습니다. 재단도 같은 내용이고요. 사단과 재단은 같은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상황보고 및 자료제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수진·전진숙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사조위 법에 따라 가지고 사고조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 규정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고조사 특례는 오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다음 행정안전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추모사업의 내용 중에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추모사업에 추모행사 개최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호, 이태원 관련 법에 국가 등이 시행하는 추모사업에 추모행사 개최가 없다는 점과 함께 법안에 재단 출연 등의 내용에 추모제의 시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우려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0페이지 25번, 유가족협의회 설립·운영을 법률로 정하고 국가 등이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유사한 입법례가 없고 재난피해자 간 형평성 문

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기획재정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의 사단, 유가족단체, 재단과 관련하여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유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요. 이러한 경우에 유가족단체가 좀 어려운 여건에 계시니까 어려움을 돋고 싶은 심정적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항상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적 자조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이라는 형식적인 틀 문제 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항상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러면서 정리가 되어 왔던 게 결국은 공익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익 재단법인으로 해서 인적 기능보다는 재단이라는 형식 을 통해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쪽으로 국고는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좀 정리가 계속되어 와서 유사 입법례가 없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이경화** 위원장님, 법무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예,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이경화** 비교표 21쪽입니다.

상황보고 및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무 부분을 규정한 부분 관련해서 앞서 국토부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응할 의무가 없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처벌 관련 형벌의 최후 수단성 및 보충성에 반할 우려가 있고 다수 유사 입법례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정부 부처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보고 제가 지켜보면 유가족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소위에서도 이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유가족 쪽에서도 다른 참사에서 거의 다 재단 형태로 들어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많은 고민을 거치셔 가지고 사단법인으로 이번에 한번 진행을 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다 배경이 있고 취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부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식과 관련해서 아까 기재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조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 형식을 논의를 하다 보면 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공익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재단 형태로 가는 논의의 귀결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취지는 다 이해하고 그런 맥락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한번 좀 이런 부분에서 다르게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특히 지금 지원 형식과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 지원이 과연 맞느냐 자조단체에 국고 지원이 맞느냐고 했지만 저희가 사례를 살펴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단체가 여러 개가 조직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피해구제 자금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형식의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신 부처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 관련

해서 의견을 한번 주시고 실제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 봤는데 검토 형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 안 해 주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저희도 지금 사단법인도 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커뮤니케이션에 약간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익사업을 하는 사단도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부처 간에 좀 더 논의를 진행해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이런 큰 참사가 벌어지고 유가족들이 이 참사에 사실은 이성을 갖고 뭘 진행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이번에는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의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안으로 광주로 가서 유가족분들이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정부와 같이 잘 협업을 해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 보고자 남들이 가 보지 않은 길을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특별법을 되게 각별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는 과거에 이런 선례가 없다 이런 것들을 항상 판단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데 한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으실까요? 되도록이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참사가 벌어지면 안 되겠지요. 재난이 벌어지지 않게 부처에서 잘 역할을 하시고 제도개선하고 예방대책 세우고 책임 있게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산불도 어마어마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재난이라든지 미처 손쓸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렇고 다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우왕좌왕하고 니 탓 네 탓하면서, 사실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실제로는 이런 큰 참사가 벌어졌을 때. 그런데 저희가 유가족분들의 뜻을 존중하고 특별법 제정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법인을 만들고 10년간 지원하고 빠르게 공익법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들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다음 요구라든지 그다음 대책들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유념을 하셔서, 사단법인화 해서 정부 지원을 해서 앞으로도 비슷한 일들이 생기면 안 되겠으나 생기게 됐을 때 이 유가족들께서 재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아마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모범 백서처럼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가족보다 더 못한 그런 논의를 진행하는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하게 좀 정부 부처 간에 논의를 해서 법에 어떻게 조정을 해 줘야 진행이 가능한지 전향적으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상황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부분은 법무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여기의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부분은 삭제하고 과태료 부

과 정도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이것도 과태료 부과 정도로 이렇게 바꾸게 된다라면 혹시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법 통과되고 그 뒤에는 이게, 국회 지원·추모위 유가족협의회 여기서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사고조사위원회의 그런 중요한 밝힐 수 없는 자료는 조금 제외한다 하더라도 잘 협조가 되나요?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이게 이태원 참사하고 조금 다른 게 이태원 참사는 사고조사 위가 꾸려져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단계고 이 사조위는 지금 이미 국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법에서 다 빼고 조사를 지켜보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예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위원회든 국회든 자료조사가, 이것은 사고가 명확히 딱 끝난 거고 사조위 결과보고만 지금 기다리지 나머지 부분은 또 따로 조사하거나 이렇게 할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서 또 다른 더한 입법례도 있는데, 이런 의무 조항이 다 없는데 여기만 이렇게 과잉으로 입법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예.

그리고 국회는 또 국회법에 따라서 자료 요청해서 할 수 있어서 국회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 예.

○**소위원장 이수진** 그래서 지원·추모위원회와 유가족협의회만 두는 것으로, 그러면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전문위원 임종수** 예, 정리해 놓겠습니다.

방금 보신 추모사업하고 추모시설 그리고 사단·재단 파트는 국토부 중심으로 부처 간에 논의를 조금 더 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상황보고 및 자료 제출 파트는 국회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다른 과태료 부과 수준을 감안해서 조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예.

○**전문위원 임종수** 21쪽 지나 2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넘어가기 전에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예.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의 요청 대상 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벌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 따르면 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과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꼭 이 의무 조항을 두려면 그 부분과의 정합성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과태료 조항도 빼고 ‘지원·추모위와 유가족협의회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예.

○전문위원 임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으로 하지요.

○전문위원 임종수 예.

그러면 이어서 22쪽에 나와 있는 보칙부터 별칙 그다음에 부칙까지 한 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보칙은 먼저 각 법률안에 포함된 각종 위원회 또는 자문단 등에 소속한 위원 또는 직원이나 소속했던 위원 또는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이러한 위원 또는 직원들의 자격을 사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 그리고 23쪽에 피해자 지원을 명목으로 한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내용까지 각 법안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안에는 비밀준수의무는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안들에서 공통적으로 해당 내용을 담고 있고.

기록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이수진 의원님 안과 전진숙 의원님 안, 서삼석 의원님 안, 권향엽 의원님 안에서 이번 여객기 참사 관련 기록물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사본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사 관련 기록물들을 활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앞서 보고드린 지원·추모위원회나 자문기구 등에서 소속했던 위원 등에 대해 형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 24쪽의 별칙 규정입니다.

별칙 규정은 각 제정안들이 전체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 사항들이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논의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상황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재재 조치를 빼기로 했고 2차 가해 금지 부분 역시 이 특별법에서 별도로 재재 조치를 두지 아니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나 그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하는 김은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세월호 피해구제법상의 입법례로 봤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금주 의원안이나 서삼석 의원님 안에 있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감정인에 대한 폭행·협박, 직무집행 방해 등등의 문제는 해당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것인지에 따라서 별칙 조항을 둘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파트에 나오는 자격 사칭이나 피해자 지원 명목의 영리활동 금지 등등의 내용 역시 세월호 피해구제법이나 이태원참사법의 선례에 따라서 그 밑에 2년 이하의 징역 파트와 함께 적절한 형량 수준을 앞에 논의되는 내용의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형량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5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에 있어서 시행일은 김은혜 의원님 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위 법령 준비기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수진 의원님 안을 비롯한 나머지 의원님 안들의 경우에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별법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실제로 유가족 측이나 피해자분들에게는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대부분 제출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집행하게 되는 정부 측 의견을 한번 확인하시고 반드시 유예기간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추모위원회나 자문단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부칙이고, 마지막 쪽에 있는 중복 지원 적용례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치료, 치유휴직 등에 관한 특례 부분은 선행 입법례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 비밀준수의무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수진·전진숙 의원안에서 지원·추모위원회 등의 위임·위탁 규정은 지금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격 사칭 금지 대상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피해자 지원 명목 영리활동 금지, 권리의 보호 부분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서는 환수 주체가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국가’를 ‘국가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기록물에 대한 조치 부분은 이것은 현행법상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해자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 열람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는 동의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칙 조항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김은혜 의원안을 중심으로 보면 지금 자격 사칭 금지의무와 영리활동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고 기타 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령 준비하는 기간이 최소한 3개월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기간 3개월을 보장하되 다만 기본적으로 빨리 즉시 시행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즉시 시행일로 옮겨를 해 놓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중복 지원 적용례라든지 심리적 증상 등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법무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이경화 법무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별칙 규정 관련해서 전반적인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다만 일부 안 같은 경우 체계·자구 보완·검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조사위원회의 직무집행 방해 관련해서 문금주 의원님 안 같은 경우 의무 규정의 대상은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 구성원이나 감정인, 그래서 총 4개의 직이 있는데 별칙 규정에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어서, 자문기구 구성원이 의무 규정에는 들어가는데 별칙 규정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이 부분을 통합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음 자격 사칭 금지의무 이 부분도 김은혜 의원님 안 같은 경우 의무 규정에는 자격을 사칭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별칙 규정에서는 자격을 사칭하기만 하면 처벌을 하는 것처럼 규정이 돼 있어서 상호 호응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비밀준수의무 위반입니다.

이 부분도 문금주 의원님 안 같은 경우 의무 규정은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별칙 규정에는 누설하고 이용만 처벌을하도록 하고 있어서 다른 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의무 규정에만 있고 별칙 규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무 규정과 처벌 규정 호응을 시키도록 표현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의무 규정에서도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보호하고 있는데 별칙 규정에는 이를 ‘직무상 비밀’이라고 달리 표현하고 있어서 표현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법무부 의견을 제가 한번 듣고 싶은데요.

2차 가해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이 특별법이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전에 법무부에서 의견을 주셨던 것 중에 정보통신망 이용법 관련해서 최고 형량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특별법보다 일반 지금 형법이나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더 중하게 처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이게 지금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에서도 5년 3년 2년 이런 식으로 다 규정에 되어 있어서 이 특별법도 그렇게 따라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특별법이 좀 경하게 처벌하고 있다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최고 형량 부분을 7년 이하로 형평성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한번 의견을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도 한번 부처 논의할 때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이경화 법무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전에 그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관련해서 오후에 보고드리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현재 양형 기준에 양형 가중 요소로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 범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 집단을 상대로 그런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에 포섭이 돼서 현재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양형 가중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현행법상으로도 양형 가중 요소로 형량 가중이 가능하고 방금 말씀 주신 다른 참사법 같은 경우는 2차 가해 행위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자·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 내용 공개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라든지 좀 특징을 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나와 있는 법안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법무부 입장은 현행법상 양형 요소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서 굳이 특별히 특별 규정을 이 법안에 대해서 따로 신설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그 특별법에서 만약에 2차 가해 의무가 규정이 된다라고 봤을 때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량상 7년이냐 5년이냐 이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2차 가해 의무에 대해서 만약에 처벌 규정이 특별법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형량상 차이가, 최고 형량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특별법에서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법무부 의견 있으시면 한번 공유를 해 주십시오.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이경화 저희는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처벌 규정으로써 처벌이 가능한데 새로운 구성요건을, 다시 새로운 범죄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어쨌든 지금 법무부 의견은 잘 들었고요.

만약에 2차 가해 의무가 특별법에 규정이 된다라고 하면 현행 시행되고 있는 다른 법령과의 처벌 형평성 문제가, 오히려 특별법 때문에 경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전문위원 임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 2차 가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에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둘 것인지, 둔다면 형량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에 관해서 다음 회의 때 이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실제 범죄도 그렇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온라인상의 명예훼손들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률에서 2차 가해를 처벌하게 되면 온라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 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등등 이런 것들까지 다 포섭할 수 있는 구성요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애로는 있을 것으로 일단 생각은 됩니다. 그 부분까지 일단 포함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저는 정준호 위원님 염려도 심정적으로 동의하지만, 제가 행안위 경찰 담당인데 이뿐만 아니라 딥페이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아까 법무부에서 얘기하듯이 이런 대형 참사에 관련돼서는 가중처벌에 관련된 조항도 있다니까 한번 들여다보시고 혹시 그게 부족하면 거기를 조금 더 입

법을 강화하는 게 우리 특별법이 중첩돼서 혼란을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국민 계도의 측면에서도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대형 참사나 이런 것 있을 때 다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예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법에 넣는 것보다 정보통신 보호법을, 지금 있는 통신망법을 보고 좀 강화해야 된다면 그쪽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게 더 좋다는 개인 의견을 드리고요.

법무부에 한 가지만 마치기 전에 여쭤보겠습니다.

희생자와 피해자로 이렇게 정의 부분에서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신분이 잘 안 바뀔 것 같은데 배우자가 신분이 바뀔 경우에는 법적인 모든 지원이나 이런 게 다 배제되나요? 배우자는 신분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이경화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검토를 못 한 상태여서 검토해 보고 차회 기일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예.

○소위원장 이수진 더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회의에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대식 김미애 백선희 이달희 이수진 전진숙 정준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임종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백원국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단장 박정수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이주희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경화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 박우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